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유안타증권(이하 “수탁자”)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신탁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text{천만원} * [1 + \text{가입 후 경과연수(최대 4년)}] - \text{누적납입금액}$$

- ② 제 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을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소득세법」 제 14조제 3항 제 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최초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며, 최저 신탁금액은 금일만 원(금10,000원)으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 ③ 신탁기간(3년이상)동안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상으로 위탁자별 계약기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탁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탁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별표1]의 “신탁자금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지3]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형)”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는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재산 운용방법 및 투자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3]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형)”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는 추가 신탁금의 운용방법 및 투자비율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방법
2.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방법([별지3]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형)”을 통한 운용지시)
3.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

제7조 (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운용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신탁계좌 개설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수탁자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3조 (신탁기본보수) ① 신탁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라 함)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신탁 원본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text{기본보수} = \text{신탁원본평균잔액} \times \text{연 (기본보수율)} \%$$

※ 기본보수율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말한다.

② 이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부터 제3항에서 기본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수를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이익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의 이익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된 방식대로 원본에 가산하거나 위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이익을 지급하거나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또는 가산한다.

② 신탁이익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5조 (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6조 (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위탁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7조 (중도해지)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제 16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 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액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8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 따른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 또는 현금화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 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의 1/3로 계산한다.

⑤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9조 (최종계산)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②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 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 2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 (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 (인감신고)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6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및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은 본 약관조항 및 신탁업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27조 (관계 법규 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 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8조 (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서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위탁자 주소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위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 (관계법규등 준용)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1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1. 제20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2%

※ 보통년은 365일(윤년일 경우 366일) 적용

신탁계약 세부내역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세부내역] 약관과 대조하면서 정확히 기재(□에는 V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계약내용	근거조항
신탁금액		금 원정 ()	약관 4조
신탁계약기간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날:	약관 2조
수익자		생년월일: 성명:	위탁자와 동일
신탁 보수	기본보수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 ()일 미만: 신탁금 평균잔액×연[]%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 ()일 미만: 신탁금 평균잔액×연[]%	약관 13조
신탁이익지급방식		☐ 만기시 일괄지급 ☐ 수시(정기)로 지급 ☒ 정기지급시기	약관 14조
운용내역 통보여부		☐ 통보를 원함 ☐ 통보를 원하지 않음(생략)	

계좌번호		계약번호	
------	--	------	--

[별표1]

신탁자금 운용방법 ("V"로 표시함)		
☐ 1. 집합투자증권	☐ 2.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3. 환매조건부채권
☐ 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 5. 예금·적금·예탁금	☐ 6. 그 밖의 금융기관 예치
* 「소득세법」 제 17 조제 1 항제 5 호의 2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정기에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다 된 정기에금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에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됨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 위 계약의 운용지시는 투자비율등록 및 수시운용지시로 구분됩니다. 최초 투자비율등록은 신탁계약체결 전 위탁자가 [별지 3]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형)”에 직접 자필 기재하여야 합니다. 투자비율등록 변경 및 수시운용지시는 [별지 3]에 직접 자필 기재하거나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해 지시 가능합니다. 이 신탁계약은 추가계약이 체결되거나 수시운용지시에 의해 금융상품 교체매매가 일어난 경우라도 마지막으로 등록된 투자비율대로 운용됩니다.

단,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할 수 없거나, 발생한 잔여금액은

등 현금성자산으로 투자됩니다.

※ 이 신탁계약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주 소:	
	생년월일:	성명: (인/서명)
수익자	주 소:	
	생년월일:	성명: (인/서명)
수탁자	주 소:	
	유안타증권주식회사	지점장: (인/서명)
대리인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본인은 상기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대한 제반 절차의 수행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별표3]

담당자	책임자	지점장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형)

유안타증권주식회사 앞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계좌번호 :

☐ 계약번호 :

☐ 투자비율등록

구분	상품구분	위험도	운용상품명	투자비율
□ 신규 □ 변경				%
				%
				%
비율 합계				100%

※ 최초 및 추가계약에 유지되는 투자비율 신청 및 변경 운용지시입니다.

☐ 수시운용지시

구분	상품구분	위험도	매도 운용상품명	투자비율/수량
				%/수량
				%/수량
구분	상품구분	위험도	매수 운용상품명	투자비율
				%
				%
비율 합계				100%

※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한 후 새로운 운용상품을 매수하는 운용지시입니다.

☐ 운용지시 관련 확인사항

※ 신탁계약의 만기보다 자산의 만기가 긴 상품을 운용지시 할 경우, 만기 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매수운용지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신탁계약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서명)
수익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서명)
수탁자	주소:		
	유안타증권주식회사	지점장:	(인/서명)

대리인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본인은 상기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대한 제반 절차의 수행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